

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0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2. 2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5. 2. 27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5. 3. 1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재무과장 오은겸)

가. 개정이유

상위법 개정사항 반영,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, 별지 제1호서식)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 →

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6항

○ “정의” 규정 삭제(안 제2조)

- “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”에 따라 위임 조례 및 사회통념 상 알 수 있는 용어로서 삭제함.

○ 제2조에서 사용한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조에서 재 약칭함
(안 제3조·제4조)

- “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“고성군수”의 약칭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, 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 제한 등)

○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○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214호(2025. 1. 14.)]

○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32호
가) 예고기간: 2025. 1. 20. ~ 2. 10.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-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, 별지 제1호서식)

-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이 2024. 1. 30. 개정되어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되었음.

- “정의” 규정 삭제(안 제2조)

- “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”에 따르면,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용어정의를 하지 않아 제1호를 삭제 하였으며

- 조례 제5조에서 기부자 예우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제2호를 삭제 하였음.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